特輯 教 育

韓 萬 春*

國家技術資格法과 工學敎育

1. 國家技術資格法과 그 施行令 및 施行規則의 公布

「技術資格에 관한 基準과 名稱을 統一하여 適正한 資格制度를 確立하고 그 管理와 運營을 効率化함으로써 技術人力의 資質 및 社會的地位의 向上과 經濟開發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國家技術資格法(以下 法이라 稱한다)이 1973年 12月 31日에 法律第2672號로 公布되었고 이 法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한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이 大統領令 第7283號로 1974年 10月 16日에 公布되었으며 다시 이에 따른 細部事項을 規定한 國家技術資格法施行規則이 1974年 12月 31日에 總理令 第142號로 公布됨으로써 國家技術資格檢定에 關한 새로운 法體系가 完成되었다.

이 法은 罰則은 없으나 그 第5條에서 敎育法에 定하는 各級 實業系學校의 卒業者는 文敎部長官이 主務部長官으로서 施行하는 技術資格檢定을 受檢할 義務를 規定하였고 電氣分野에서는 電氣事業法에 依據한 電氣主任技術者 1級, 2級 및 3級資格이 各各 工業振興廳長이 主務部長官으로서 施行하는 電氣技士 1級 및 2級資格과 同等하게 規定되어 今年度부터는 이 法에 따라 電氣技士試驗이 實施되는등 우리나라 工學敎育의 將來에 큰 影響을 미칠것으로 生覺된다.

이 法은 工學系의 各分野에 대한 技術資格을 技術系와 技能系로 分類하고 다시 技術系는 技術士, 技士 1級 및 技士 2級의 3等級, 技能系는 技能章, 技能士 1級, 技能士 2級 및 技能士補의 4等級으로 區分하고 있다. 技術系의 技術士는 技術士法의 技術士에 該當하는 것이고 技士 1級, 2級은 各各 4年制大學과 2年制 初級大學, 專門學校등 卒業者를 對象으로 하는 것인데 學歷에 關係없이 下級技能系資格取得者에게 即時 또는 어느 期間經過한 後 上級의 技術系資格檢定에 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同法施行令에서는 技術分野를 19分野로 나누고 各分野에 대하여 다시 여러 資格種目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우리와 直接 關係있는 電氣分野는 電子分野가 獨立되어 表 1과 같이 資格種目이 定하여져 있다.

表 1. 電氣電子系技術資格種目
(法施行令 別表 3 拔萃)

技術分野	資格種目		
	技術士	技士1級	技士2級
4. 電氣	發送配電 電氣機器 電氣應用 電氣材料	電氣 電氣工事	電氣 電氣工事 信號保安
5. 電子	計測制御 電子計算機 電子材料 電氣音響	電子 工業計器	電子 工業計器
17 安全管理	電氣安全	電氣安全	電氣安全

資格基準에 있어서 技術系의 技術士는 技術士法에서와 같이 7年以上의 實務經歷을 要求하고 있으나 4年制大學卒業은 必要로 하지 않으며 技士1級資格取得後 7年經歷을 要件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異常한 것은 技士1級資格이 없는 技士2級資格取得者로서 9年以上의 實務經歷이 있는 者도 技術士檢定을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서 技士1級資格을 輕視하고 있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技士1級과 技士2級은 各各 4年制大學과 2年制初級大學, 專門學校등 卒業者(豫定者包含)를 對象으로 하고 있는데 技士2級에 있어서는 正規學校가 아닌 韓國精密機器센터의 2年制技術訓練過程履修者도 그 資格을 認定하고 있다. 또 技士1級은 技士2級資格取得者와 2年制初級大學專門學校등 卒業者로서 2年以上의 實務經歷이 있는 者의 受檢資格을 認定하고 있으며 技士2級에 있어서는 技能系의 技能章 또는 技能士1級의 資格이 있는 者에 대하여 經歷制限없이 受檢資格을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正會員 : 延世大理工大敎授(當學會 會長·工博)

技能系에서 技能章은 技術系의 技術士에 該當하는것으로 볼 수 있는데 技能士1級資格取得後 7年以上의 敎育訓練 및 實務에 從事한 者에게 受檢資格을 주고 있다. 技能士1級은 2年制初級大學 또는 專門學校등 卒業者(卒業豫定者包含) 및 技能士2級資格取得後 3年의 實務經歷이 있는 者와 韓國精密機器센터의 2年制技術訓練課程履修者 및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訓練課程의 履修者에게 受檢資格을 認定하고 있다. 技能士2級은 技能士補의 資格이 있는 者, 實業系高等學校 2學年 修了者(修了豫定者包含), 實業系以外의 高等學校卒業者(卒業豫定者包含), 高等技術學校 또는 職業訓練機關에서 一定時間以上의 課程을 履修한者 및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訓練課程履修者에게 受檢資格을 주고 있으며 技能士補는 資格基準없이 試驗에 合格하면 된다.

以上의 여러 技術資格基準을 現行敎育制度와 對應시켜서 整理해보면 4年制大學卒業者(卒業豫定者包含, 以下 같음)는 技士1級受檢資格이 있고 2年制初級大學, 專門學校等 卒業者는 技士2級과 技能士1級의 受檢資格이 있으나 이밖의 訓練課程履修者도 同等한 資格이 認定된다. 한편 工高卒業資格으로 受檢할 수 있는 技術等級은 없고 다만 工高 2學年修了(豫定者包含) 後에 人文系高等學校卒業者, 高等技術學校履修者 및 相當한 訓練課程履修者와 더불어 技能士2級에 應試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한편 前述한 바와 같이 電氣主任技術者 1, 2級資格은 다같이 電氣技士1級, 主任技術者3級은 電氣技士2級과 同等하게 되는등 政府各部處에서 主管하던 各種 國家技術資格檢定은 이 法發效에 따라 이 法에 依據해서 施行하게 되므로서 이 法은 우리나라 工學敎育 全般에 대하여 큰 影響을 갖어올 것으로 豫見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管見되므로서 早速한 是正이 要求되는 것이다.

2. 法施行에 따를 問題點

筆者는 1972年에 文敎部委囑으로 延世大學校 産業技術硏究所에서 進行한 實業系大學敎科課程分析 및 改善에 關한 硏究를 主導하였고 이 結果를 要約補完하여 1974年 9月號 本學會誌에서 「우리나라 工學敎育의 現況과 問題點」에 對하여 論한바 있다. 筆者는 이 論稿에서 工學敎育에 있어서도 醫師나 藥師資格試驗과 같이 技術資格國家考試를 實施한 後 이에 合格된 技術者에게는 醫師나 藥師와 같은 惠澤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提議한바 있다. 그러나 今般에 公布된 이 法은 이러한 意圖와는 相當히 乖離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1) 技術 및 技能系의 混合과 現行敎育制度와의 乖離

첫째는 技術者와 技能工을 한데 묶어서 한 法으로 混合된 技術資格考試制度를 實施하는데 無理가 있으며 現行敎育制度와 乖離되어 있다는 것이다.

政府는 第一次 및 第二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을 進行하면서 科學技術振興5個年計劃과 科學技術開發長期綜合計劃을 樹立하고 技術人力의 需給計劃을 發表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技術人力을 技術者, 技術工 및 技能工의 3等級으로 區分하고 있다.

이 3等級은 各各 4年制大學, 2年制初級大學專門學校 및 工高卒業者를 對象으로 하고 있어서 現行敎育制度에 잘 對應되고 있는데 「技術工」이란 말은 technician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技能者」 또는 「技能士」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筆者는 提案한바 있다.

何如間 이제까지의 政府의 技術系資格區分은 技術士法에 依해서 大學卒業後 7年以上의 經歷을 要求하는 技術士를 論外로 하면 우리나라의 現行敎育制度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法의 施行으로 技術者와 技術工(技能者)의 區分은 없어지고 現行敎育制度와는 乖離된다.

우리나라에서 技術工, 技能工等의 名稱이 歡迎을 받지 못하므로 技士2級 또는 技能士등으로 부른다는 意圖는 어느 程度 理解할 수 없는 것이 아니나, 技士와 技能士의 機能과 役割은 區分되어야 할 것이고 初大 및 工專卒業者가 技士2級과 技能士1級의 受檢資格이 同時에 다 있다는 것은 우스운 일로서 어떤 한 等級으로 統一되어야 하겠으며 또 工高卒業者가 受檢할수 있는 한 等級도 있어야 될 것이다.

또 이 法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各各 下級資格 取得者에게 一定한 經歷期間經過後 上級資格을 取得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下級資格者에게 意慾을 북돋아 주는것 같기는 하나 한편 例를 들면 正規大學敎育을 마치지 않은 X선技士나 齒科技工士가 一定期間의 經歷이 있다고 하여서 醫師나 齒科醫師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實務經歷만 가지고 上級技術者의 資格을 認定하는 것은 問題라고 아니할 수 없다. 技術과 技能은 嚴然히 區別되는 것인데 이 法의 施行으로 이 區分은 없어지고 工學敎育의 機能과 必要性은 弱化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技術者 또는 技士라는 말이 濫用되지만 醫科大學, 齒科大學이나 藥學大學을 卒業하고 各各 國家試驗을 거친 醫師, 齒科醫師 및 藥師등과 같은 社會的 地位와 權能이 保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最近에 工科系大學志願者의 數가 줄고 質이 低下되는 것이 큰 問題로 되고 있는 現實에서 이 法의 施行으로 工科系大學卒業者의 矜持와 士氣를 低下하는 要因이 되지 않을가 憂慮되는 것이다.

最近 實力이 있으면 學歷은 구태어 必要없다는 見解가 一部에는 있으나 人文社會科學分野는 몰라도 前述한 醫學, 齒醫學, 藥學等 分野와 같이 相當한 敎養, 基礎 및 實習等을 要하는 工學敎育에서 基本的인 學校敎育을 無視하는 것은 매우 危險한 일이다. 極端으로 말하면 엉터리 醫師나 藥師는 기껏하면 몇사람의 生命을 끊게하는 것에 그치지만 엉터리 技術者는 數百, 數千의 人命에 被害를 줄 수 있고 또 數百億에 達하는 物的損失도 엉터리 技術者 한 사람에 依해서 惹起될 수 있다는 것을 生覺할 때 이 法의 施行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技術水準向上이 阻害되고 實力있는 技術者의 士氣가 低下될 것을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2) 技術職公務員의 特惠

둘째는 이 法 施行令 第6條에 規定한 技術職公務員의 技術資格取得에 대한 特惠이다. 이에 依하면 一定期間 勤務한 各級의 技術職公務員은 1984年末까지 別途로 主務部長官이 行하는 檢定에 合格하면 技術資格을 주도록 特惠를 주고 있는데 技術系公務員을 優待할려면 다른 方法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主로 机上에서 技術業務를 다루는 技術系公務員에게만 이런 特惠를 주는 措置는 理解하기 困難하며 前述한 醫師나 藥師의 境遇에는 想像도 못할 일이다.

(3) 資格試格의 二元化

다음에는 같은 技士의 資格檢定을 前述한 바와 같이 實業系大學卒業者(學生)에 대하여는 文敎部長官이 主務部長官이 되고 그밖의 者에 대하여는 各部長官(電氣分野의 경우에는 工業振興廳長)이 主務部長官으로 되어서 二元的으로 施行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事務的으로 複雜할 뿐 아니라 技術資格의 二元化를 招來할 憂慮가 있다.

工學敎育의 質的向上을 爲하여 工科系大學卒業者에게 資格考試가 必要함은 前述한 바와 같이 筆者도 同意하는 것이나 같은 技士試驗을 主務部長官만 바꾸어서 施行하는 것은 煩雜할 따름이다.

오히려 重要한 것은 다른 分野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假令 大學의 電氣工學科卒業者가 義務的으로 受檢할 國家技術資格試驗이 電氣事業法의 電氣主任技術者試驗과 同等하다고 된 電氣技士試驗과 같을 必要가 있느냐는 것이 問題이다. 즉 電氣主任技術者試驗은 電氣工學科卒業者로서 一般的으로 必要한 資格을 檢定하는 것이 아니고 電氣事業法에 의거하여 「電氣事業用電氣工作物의 工事維持 및 運營에 關한 保安의 監督을 擔當」하는 保安擔當者로서 必要한 資格을 檢定하는 것으로서 이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六個科目을 受檢토록 되어 있었는데 新法에서도 人命에 關係되는 電氣工作物의 保安을 爲해서는 電氣事業法에 規定된 水準의 資格檢定이 必要할 것인 反面에 保安擔當者가 되는 것은 電氣工學科卒業者의 極히 一部이므로 이러한 內容의 試驗을 모든 電氣工學科卒業者에게 强要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上記 文敎部長官이 施行하는 學校卒業者에 對한 資格試驗은 該當學科卒業者로서 基本的인 科目(選擇科目)包含에 對하여만 施行하고 主務部長官이 施行하는 實務에 必要한 資格試驗은 文敎部長官이 實施한 檢定合格者에게 必要한 科目을 追加하는 등의 別途措置를 取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4) 試驗問題의 交附

네째는 法施行令 第13條를 보면 모든 技術資格試驗의 모든 出題는 科學技術處에서 管掌하고 各主務部長官은 試驗施行前에 問題를 交附받도록 되어 있는것인데 이 法에 明示되어 있는 數千種目의 資格試驗問題를 한 곳에서 다룬다는 것은 말로는 쉬울 것이나 事務的으로 너무 複雜하고 容易하지 않을 것이다. 實際에 있어서 出題는 科學技術處에서 個別的으로 出題委員을 委囑하게 될 것인데 各 專門別 出題委員選定에 있어서 混亂이 있을 것으로 豫想되며 筆者는 이미 專門外科目의 出題要請을 받고 拒絕한 事例가 있다. 또한 各分野技術資格의 等級을 統一한다고 하지만 分野에 따라서 어느 程度 水準이 달라야 될 것을 機械的으로 統一한 데도 問題가 있다. 또 出題에 있어서 主觀式 客觀式等 問題形式의 區分은 이 法이나 施行令에 明示되어 있지 않으나 試驗管理上과 施行令 第14條의 選多型試驗問題의 採點에 關한 規定을 보면 技士1級以下의 檢定에서는 選多型試驗만으로 될 公算이 큰데 選多型 問題만으로는 高級技術者로서의 眞實한 評價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公認되고 있어서 主觀式을 加味하여야 할 것인데 試驗管理가 큰 問題일 것이다.

3. 電氣分野에서의 問題點

다음에는 우리와 直接的으로 關聯이 있는 電氣分野에 對하여 좀 더 言及하기로 한다.

電氣分野에서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 法 施行前에 電氣事業法에 依한 電氣主任技術者 1級, 2級, 3級資格試驗과 電氣工事業法에 依한 電氣技術者甲類, 乙類, 丙類의 資格試驗制度가 施行되어 왔었는데 電氣主任技術者 1級, 2級 및 3級의 資格을 갖인 者는 申請만 하면 各各 甲類 및 乙類 工事技術者의 資格을 取得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丙類만 別途試驗이 施行되어 왔다.

電氣主任技術者 資格檢定은 前述한 바와 같이 電力分野의 거의 모든 科目을 包含하는 六個科目에 對하여 相當히 程度가 높은 試驗을 實施하여 왔으며 1級 및 2級은 主觀式과 客觀式混用, 3級은 客觀式만으로 出題되고 1級은 實地로 大學卒業直後에 資格取得이 퍽 어

려울 程度로 높은 水準을 誇示하여 電氣工學發展에 寄與하여 왔다.

新法에서는 電氣技士 1級 및 2級資格으로 代置되어 電氣主任技術者 1級 및 2級이 電氣技士 1級으로 認定되고 主任技術者 3級이 電氣技士 2級으로 認定되어 實質的으로 電氣主任技術者 1級資格은 없어진 셈이며 二級에 比하여 훨씬 程度가 높고 實力이 優秀한 一級資格者와 二級資格者가 同等하게 取扱되어 衡平의 原則을 벗어나게 되었다. 한편 이미 初大工專 및 工高를 卒業하고 主任技術者 2級 및 3級資格을 取得한 者는 各各 電氣技士 1級 및 2級으로 認定되지만 今後의 卒業者는 2年制初大, 工專卒業者는 2級에 應試하여야 하고 工高卒業者는 應試資格조차 認定되지 않는 것도 衡平을 잃은 것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電氣事業法의 主任技術者를 비롯한 많은 國家技術資格이 3等級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一律的으로 2等級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 電氣工事業法에서의 電氣技術者甲類, 乙類 및 丙類는 각각 電氣工事技士 1級, 電氣工事技士 2級 및 電氣工事技能士 2級과 同等하게 되었고 電氣工事技士試驗과 電氣技士試驗은 共通科目은 있으나 別途科目에 對해서 應試하게 되므로서 過去의 電氣主任技術者의 惠澤은 없어지는 것도 問題이고 電氣工事技士를 電氣技士와 同格으로 하고 技術者丙類를 技能士 2級과 同等하게 한 것도 釋然치 않다.

또 工業計器技士가 따로 電子分野에 屬해 있는 것과 電氣安全技士資格이 獨立되어 있는 것도 問題點이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境界領域에 關한 問題點은 法施行規則에 定해진 試驗科目에도 內包되고 있다.

表 2는 施行規則에 定해진 試驗科目이고 表 3은 從來의 主任技術者試驗科目이다.

表 2. 電氣電子分野技術資格試驗科目
(法施行規則 別表 5 拔萃)

分野	資格種目	試驗科目
電氣	電氣技士 1級, 2級, 電氣工事技士 1級, 2級 共通	1. 電氣磁氣學 2. 回路理論 3. 電氣機器 4. 電力工學(發電, 變電, 送配電)
	電氣技士 1級	5. 一般電子工學, 電氣應用, 電氣關係法規, 電氣施設管理, 高電壓 및 電氣材料, 計測
	電氣工事技士 1級, 2級 共通	5. 發電設備, 變電設備, 電氣關係法規, 電氣應用 및 計測
電子	電氣技士 2級	5. 電氣計測, 電子應用, 電氣關係法規, 電氣施設管理 및 電氣材料
	電子技士 1級, 2級 共通	1. 電氣磁氣學 2. 回路網理論 3. 電子回路 4. 物理電子工學
	電子技士 1級	5. 自動制御, 超高周波工學, 電子材料 및 通信理論
	電子技士 2級	5. 自動制御 및 電子材料
	工業計器技士 1級, 2級 共通	1. 物理化學 2. 電子工學 3. 工業計測 4. 自動制御 5. 一般電氣工學 및 一般機械工學

表 3. 電氣主任技術者試驗科目

1. 電氣理論 및 電氣計測
2. 發電所 및 變電所의 設計 및 運轉
3. 送電線路 및 配電線路의 設計 및 運用과 屋內配線設計
4. 電氣機器 및 電氣材料
5. 照明, 電熱, 電動機應用, 電氣化學, 自動制御 및 電氣鐵道
6. 保安에 關한 電氣關係法令 및 電氣施設管理

表 2와 表 3을 比較할 때 먼저 主任技術者檢定의 面에서 보면 新法의 科目이 不足한 感이 있다. 勿論 表 3의 科目數가 너무 많고 一部科目은 不必要하지 않으냐는 意見이 없던 것은 아니나 大體로 電氣主任技術者로서는 이 程度의 科目에 對한 知識은 要求되고 特히 最近에 增加하고 있는 電氣事故의 防止를 爲해서도 必要한 것인데 新法의 科目은 實務에 關聯이 적은 理論分野에 너무 置重되고 一般電子工學이 追加된 한편 最近에 그 重要性이 增加되고 있는 自動制御가 電子分野에는 包含되고 電氣分野에는 漏落되고 있는 등등 理解할 수 없는 點이 많다.

한편 主任技術者를 願하지 않는 一般的인 電氣工學科 卒業者를 爲해서는 이 모든 科目을 必須로 應試케 함은 不必要할 것이며 基礎科目以外의 科目은 選擇토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前述한 바와 같이 工業計器技士가 電子分野에서 獨立하여 있고 試驗科目에 數學은 없는데 物理化

學이 包含되어 있는 것도 理解하기 困難하다.

原則的으로 資格種目은 大學의 該當學科에 對應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必要하다면 選擇科目으로 專門化하도록 하는 것이 妥當하며 大學卒業者를 爲한 資格試驗과 主任技術者等 專門職試驗은 分離되어야 할 것이다.

4. 結　言

以上 國家技術資格法 및 同施行令公布에 따른 問題點을 工學敎育과 關聯하여 考察하였다.

一旦 公布된 以上 法施行過程에서 本稿에 提示한 여러 問題點이 修正, 補完, 解決되므로서 우리나라의 技術水準向上과 工學敎育發展에 寄與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한마디 더 附言할 것은 國家技術資格試驗 合格者에 對한 劃期的인 處遇改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法10條에 따라 「技術資格取得者의 經濟的 社會的地位의 適正한 維持와 그 就業 및 身分保障에 關하여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할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하루 빨리 具體的인 施策을 提示하여 다른 分野에 比하여 훨씬 고되고 恒常 努力하며 工夫하는 技術人들이 그에 相當한 處遇를 받도록 萬全의 措置를 取하고 優秀한 젊은 學徒들이 보람을 찾고 矜持를 갖을 수 있는 技術資格이 되므로서 이 法이 目的으로 한 「技術人力의 資質 및 社會的地位向上」이 空念佛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

═學會消息═

74年 12月末로 任員의 任期가 滿了되어 75年, 76年度 任員을 改選한 바 아래와 같이 選出되어 이에 알립니다.

會　　長 韓萬春(延世大 敎授)
副 會 長 辛基祚(韓電 副社長)
　　李承院(서울工大 敎授)
總務理事 申芝秀(韓電送變電部長)
　　任達鎬(漢陽工大 敎授)
財務理事 千熙英(高麗大 敎授)
　　金承世(韓電理事)
編修理事 李允鍾(漢陽工大 敎授)
　　高明三(서울工大 敎授)
　　朴昌燁(延世大 敎授)
調査理事 朴昊鎬(서울工大 敎授)
　　成樂正(韓電理事)
　　鄭然澤(明知大 敎授)
事業理事 朴聖圭(東國大 敎授)
　　朴永文(서울工大 敎授)
理　　事 池哲根(서울工大 敎授)
　　梁興錫(서울工大 敎授)
　　金鎭珠(韓電顧問)
　　吳相世(延世大 敎授)
　　金相演(韓電發電部長)
　　宋吉永(漢陽工大 敎授)
　　金俊植(漢陽工大 敎授)
　　李在淑(國際電氣 常務理事)
　　金甲鉉(韓電 서울電力所長)
　　韓甲鎬(韓永工業 常務理事)
　　申龍澈(電氣通信研究所長)
　　鄭樂陀(仁荷工大 敎授)
　　朴容澈(京仁에너지 副社長)
　　崔燉昌(韓電技術開發研究所長)
　　趙　哲(서울工大 敎授)
　　玄京鎬(國防科學研究所 副所長)
　　金東熙(全엔지니어링 副社長)
　　吳兢烈(成均館大 敎授)
　　崔元銀(中央大 敎授)
　　徐國哲(光云電子工大 敎授)
　　李昌健(原子力研究所 研究官)
　　金思培(檀國大 敎授)
　　金定德(陸軍士官學校 敎授)
　　朴忠圭(崇田大 敎授)
　　金鍾遠(仁荷工大 敎授)
　　金漢星(建國大 敎授)
　　成元模(前韓電 監事)
　　吳宗煥(新韓電機・專務理事)
　　河承植(工振廳機電指導課長)
　　文容會(大韓電線 專務理事)
　　金壽集(東洋物產會長)
監　　事 成瓚鏞(新亞產業公司 社長)
　　白英鶴(科學技術處 振興局長)
終身理事 尹日重(學術院 終身會員)
　　李宗日(在美)
　　禹亨疇(서울工大 敎授)
　　丁性桂(서울工大 敎授)
　　林大喆(大田支部長)
　　金基洙(蔚山支部長)
　　朴光德(大邱支部長)
　　高炳烈(全南支部長)